

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·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(제30조제1항 관련)

1. 성능시험·정도검사 수수료

분 야	대 상 기 기	수수료(원)	
		성능시험	정도검사
가. 자동차 분야	1)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		
	가)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	641,000	269,000
	나)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		
	(1) 4륜차용	647,000	299,000
	(2) 2륜차용	647,000	348,000
	(3) 삭제 <2018. 3. 29.>		
	다)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		
	(1) 원동기	775,000	347,000
	(2) 차대(4륜차용)	822,000	347,000
	(3) 차대(2륜차용)	1,013,000	409,000
	(4) 삭제 <2018. 3. 29.>		
	라)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	637,000	424,000
	마) 입자형태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	
	(1) 차대 및 원동기(전체용)	478,000	241,000
	(2) 원동기(부분 채취식용)	792,000	315,000
	(3) 입자개수 측정장치	1,458,000	1,157,000
	바)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	1,785,000	762,000
2)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			
가)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	2,196,000	227,000	
나)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,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	1,163,000	236,000	
다) 자동차 배출가스(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)분석기,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			
(1) 일산화탄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528,000	73,000	
(2)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565,000	73,000	
(3)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651,000	94,000	
(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포함)		(83,000)	
라) 매연측정기			
(1) 여지반사식	681,000	73,000	
(2) 광투과식	1,015,000	175,000	
마)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	362,000	86,000	
바)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5,855,000	1,259,000	
나. 대기 분야	1)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	
(가) 일산화탄소, 질소산화물, 이산화황, 산소와 총	671,000	184,000	

	탄화수소 측정기기 (나) 질소산화물,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(2개 항목 기준)	809,000	223,000
	2)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(가) 먼지	1,163,000	651,000
	(나) 가스	1,163,000	651,000
	(다) 질소산화물,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(2개 항목 기준)	1,385,000	802,000
	(라) 유속계	964,000	480,000
	3)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(각 항목별)	1,028,000	606,000
	4)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(가) 입자상	658,000	481,000
	(나) 가스	555,000	426,000
다. 수질 분야	1)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712,000	322,000
	2)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387,000	755,000
	3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276,000	765,000
	4)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237,000	755,000
	5)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237,000	755,000
	6)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651,000	535,000
	7)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006,000	517,000
	8)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026,000	549,000
라. 먹는 물 분야	1)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929,000	439,000
	2)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931,000	440,000
마. 소음·진동 분야	1)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(가)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	695,000	37,000
	(나)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427,000	248,000
	2)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	795,000	40,000
바. 토양 분야	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(지상 포함) 1) 액상부	2,384,000	1,540,000
	2) 기상부	312,000	300,000
사. 실내 공기 질 분야	1) 실내공간오염물질(포름알데히드, 미세먼지, 휘발성 유기화합물, 석면 및 총부유세균)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(가)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	1,109,000	713,000
	(나) 실내공간오염물질(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)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	622,000	170,000
	(다) 실내공간오염물질(미세먼지)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	557,000	163,000
	(라) 실내공간오염물질(석면, 총부유세균)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	557,000	163,000
	2) 실내공간오염물질(포름알데히드·미세먼지·일산화탄소·이산화탄소·오존·이산화질소·라돈)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(가)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	782,000	341,000

부속기기			
(나)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103,000	606,000	
(다)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103,000	606,000	
(라)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103,000	606,000	
(마)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1,103,000	606,000	
(바)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와 그 부속기기	788,000	488,000	

비고

1.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.
2.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%를 가산한다.
3.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(액상부)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(Probe)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.

2. 검정수수료

교 정 용 품	수수료(원)	비고
가. 측정기기 교정가스(1항목 기준)	44,000	
나.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(1매 기준)	10,000(13,000)	
다.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(1개 기준)	35,000	
라.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(100매/1박스 기준)	2,200(3,100)	
마.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(50 m/1롤 기준)	4,300(11,700)	

비고

1.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.
2. ()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.

3. 출장비

- 가.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(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)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. 다만,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나. 1일당 출장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,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.
- 다.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.